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71
------------	-------

발의연월일 : 2018. 11. 9.

발 의 자 : 손금주 · 김종회 · 박완주

경대수 · 김현권 · 김정재

이개호 · 이만희 · 김영춘

송영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지원 기관인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 등의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센터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을 위해 지원기관의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  
공 및 보육·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3.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 자금  
확보 지원

4. 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

5. 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6조의2(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컨설팅 지원</li> <li>2.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li> <li>3.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li> </ol>

자금 확보 지원

4. 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

5. 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 ·

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